

▶ 제출서류

[1차 지급제출서류]

- 1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신청서
-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3 대리운전 보험 가입내역서(20년 9월 ~ 21년 3월 기간 포함) 또는 대리운전보험증권
- 4 통장사본(타인명의 불가)
-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-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)

[2차 지급제출서류]

- 7 21년 4~6월 보험료 납부확인서(내역서)
- ※ 각 제출서류는 개별 PDF파일로 작성 및 첨부
(파일명은 각 제출서류명으로 작성)

▶ 추진일정



▶ 신청시 유의사항

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
-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,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서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한 제외대상 및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
-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,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력에 대한 처리는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4조를 준용

제출서류

추진일정



공고문 확인

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→ 사업공고

2차 사업공고

1차 사업 모집 미달 시
2차 사업 모집공고 예정(7~8월 예정)

2021년

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월 보험료 50%지원

대리운전자의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한
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

21. 4. 1(목) ~
4. 20(화) 18:00



01 사업개요



도내 거주하는 대리운전자의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

▶ 접수기간

21.4.1(목) ~ 21.4.20(화) 18:00

▶ 지원조건

- 공고일(3.22.)기준 6개월 전부터 대리운전업에 종사
- 공고일(3.22.)기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▶ 지원제외 대상

-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경력의 대리운전자
- 모집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두지 않은 자
- 모집기간 마감일(4.20)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본인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자

▶ 지원내용

- 21년 납부한 대리운전자 월 보험료의 50% 지원(월 최대 5만원)
- 지원한도 : 최대 5만원(월), 1인 최대 6개월분 지원 ('21년도 납입보험료)
- ※ 단, 1인 1개 보험에 한하며, 최대 5만원/월 한도로 지원
- 기타사항 : 중복지급 및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하여 손해보통 사고지급액 확인 후, 보험료 지급 결정

▶ 지원방법

- 손해배상보험료 지원금을 대리운전자 계좌에 이체

▶ 지원기간 : 최대 6개월분

- 신청인원 수에 따라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재산정
- 최대 6개월 지원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조정 가능

02 지급방법



▶ 연 보험료 일괄 및 월별 납부자

- [대상자]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연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월별로 납부한 대리운전자
- [지원금 지급순서]
 - 1차 지급 : '21.5월 말 기준으로 최대 '21.1~3월 납부한 월 보험료 50% 소급지급
 - 2차 지급 : 1차 지급기간('21.1~3월)을 제외한 최대 '21.4~6월 납부한 월 보험료 50% 소급지급
 - ※ 단, 4~6월 중도퇴사 또는 보험료 미납 시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지원
- [추가 증빙서류] 최초 제출서류 외 [4~6월 보험료 납부 내역서] 추후 제출

▶ 월별 보험료 납부자

- [대상자]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월별로 납부하는 대리운전자
- [지원금 지급순서]
 - 1차 지급 : '21.5월 말 기준으로 최대 '21.1~3월 납부한 월 보험료 50% 소급지급
 - 2차 지급 : 1차 지급기간('21.1~3월)을 제외한 최대 '21.4~6월 납부한 월 보험료 50% 소급지급
 - ※ 단, 4~6월 중도퇴사 또는 보험료 미납 시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지원
- [추가 증빙서류] 최초 제출서류 외 [4~6월 보험료 납부 내역서] 추후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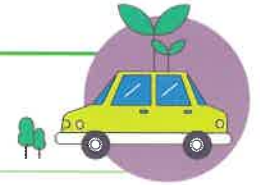
▶ 건별 보험료 납부자

- [대상자]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별(콜별)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운전자
- [지원금 지급순서] 단체보험 가입자와 동일
 - 1차 지급 : '21.5월 말 기준으로 최대 '21.1~3월 납부한 월 보험료 50% 소급지급
 - 2차 지급 : 1차 지급기간('21.1~3월)을 제외한 최대 '21.4~6월 납부한 월 보험료 50% 소급지급
 - ※ 단, 4~6월 중도퇴사 또는 보험료 미납 시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지원

▶ [지원금 산출방법]

- 보험료 지급기간(1, 2차)에 해당하는 건별 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납입한 월별 보험료 산출
- 납입한 월 보험료의 50%(최대 50천원) 산정하여 1차(최대 1~3월 납입 보험료), 2차(최대 4~6월 납입 보험료) 지급
- [추가 증빙서류] 최초 제출서류 외 [4~6월 보험료 납부 내역서] 추후 제출

03 신청방법



▶ 신청기간

- '21. 4. 1(목) ~ 4. 20(화) 18:00 접수분까지

▶ 신청방법(온·오프라인 병행모집)

- [전자메일] kms@gnepa.or.kr ※ 가급적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바람
- [우편접수]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우편 송부
 - ※ 4.20(화) 도착분에 한함
 - ※ 우)51408,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362, 창원컨벤션센터 1층, 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
- [팩스접수] 055-212-6785

▶ 선정방법 :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확인

- 1차 선정자 가운데 보험가입 해지 및 중단사유 발생 시, 차순위 신청자 선정

